

《研究基礎資料：翻譯》90-07

蘇聯의 聯邦脫退法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聯邦脫退法*

(1990年 4月3日 制定)

第1條 이 법은 蘇聯憲法 제72조에 따른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에 관한 問題의 解決節次를 정한다.

第2條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는 聯邦構成共和國市民의 國民投票에 의한 自由로운 意思表示를 통하여 결정한다. 國民投票의 실시여부는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 자체의 發議 또는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常時 거주하고 聯邦法律에 따라 選舉權을 가지는 蘇聯市民 10분의 1이상의 連署에 의한 發議로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에서 결정한다.

國民投票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國民投票에 관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律에 따라 실시한다.

國民投票은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決定이 채택된 후 6月내지 9月이내에 祕密投票로 실시한다.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에 관한 問題가 발생할 당시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常時 거주하고 聯邦法律에 따라 選舉權을 가지는 蘇聯市民은 投票에 참가하여야 한다.

投票期間 中에는 國民投票에 붙여진 問題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弘報活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3條 國民投票은 聯邦構成共和國內의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등 自治體別로 실시한다.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의 市民은 自身의 法的地位에 관한 問題를 제기할 權利 뿐만 아니라 聯邦에의 淺留 또는 脫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權利를 가진다. 領土內에 당해 市民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民族集團이 집결하고 있는 地域을 포함하는 聯邦構成共和國의 경우, 이러한 地域에서의 投票結果는 國民投票의 結果를 결정하는 期間 동안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第4條 聯邦最高會議는 聯邦脫退에 관한 國民投票을 준비하고 國民投票의 實施日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취합할 목적으로 이 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을 포함한

* 이 법의 정식명칭은 '聯邦構成共和國의 소비에트聯邦脫退와 관련된 問題의 解決節次에 관한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法律'이다.

모든 利害關係集團의 代表者들이 참석하는 委員會를 구성할 수 있다.

第5條 聯邦最高會議은 聯邦脫退에 관한 國民投票의 준비기간중 및 그 결과의 집계기간중 聯邦構成共和國市民의 완전한 意思表示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共和國最高會議의 同意下에 投票管理人으로서 聯邦, 여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의 授權代表를 당해 共和國에 주재시키는 문제를 결정한다.
聯邦最高會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投票期間 동안 당해 共和國에 UN代表를 초빙할 수 있다.

第6條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決定은 聯邦脫退問題가 제기될 당시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常時 거주하고 聯邦法律에 따라 選舉權을 가지는 蘇聯市民 3분의 2 이상이 國民投票를 통하여 찬성한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은 國民投票의 結果를 검토하여야 한다.
領土內에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이 집결하고 있는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또는 기타 地區를 포함하는 聯邦構成共和國의 경우, 당해 共和國 最高會議은 自治共和國最高會議 및 관련 人民代表會議과 공동으로 國民投票의 結果를 檢討하여야 한다.

第7條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은 聯邦最高會議에 國民投票의 結果를 제출하여야 한다. 領土內에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이 집결하고 있는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自治體를 포함하는 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會議은 당해 民族集團이 집결하고 있는 각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自治體에 관련 權力機關의 決定 및 提案과 함께 國民投票의 結果를 제출하여야 한다.
國民投票가 이 法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결정된 경우, 聯邦最高會議은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에서의 논의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國民投票의 실시기간동안 이 法에 위반하는 事件이 발생한 경우, 聯邦最高會議은 그 3개월이내에 당해 共和國 전역, 일부지역, 自治體 또는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의 집결지역에서 再國民投票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8條 聯邦最高會議은 각 聯邦最高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의 귀결에 관한 연구 및 평가를 위하여,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에 관한 國民投票의 結果 및 利害關係集團이 제출한 提案을 그 1개월이내에 모든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最高權力機關 기타 自治體의 權力機關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9條 聯邦構成共和國에서의 聯邦脫退에 관한 國民投票의 결과 및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最高權力機關 기타 自治體의 權力機關의 관련주장은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는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 最高會議가 승인한 聯邦最高會議에 의한 委任을 근거로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로 야기되는 諸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經過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經過期間 동안 聯邦憲法 및 法律은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內에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第10條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決定이 國民投票에 의하여 不決된 경우, 이 문제에 관한 再國民投票은 당해 國民投票후 10년이 지나야 실시할 수 있다.

第11條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聯邦最高會議,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 및 당해 共和國의 最高權力機關은 聯邦, 당해 共和國,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 및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의 權利와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經過期間 동안 調整委員會를 구성한다.

第12條 經過期間 동안 聯邦閣僚會議는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 政府의 參加下에 國境問題와 당해 共和國 領土內에 위치하고 있는 軍事施設 및 軍部隊에 관한 提案을 마련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聯邦大統領 및 聯邦最高會議에 제출하고, 聯邦最高會議는 이를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로 이송한다.

第13條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上的의 原則과 規範 및 聯邦이 서명한 國際條約上的의 人權 및 自由權保障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多者間協定에의 參加問題는 당해 協定에서 정하는 規則에 따라 해결한다. 聯邦이 체결하고 聯邦構成共和國가 聯邦을 탈퇴할 당시 有效한 多者間 및 兩者間協定은 反對意思가 없는 경우 聯邦을 탈퇴한 共和國에 대하여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聯邦이 國際條約에의 參加에 관한 諸問題를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 후, 이러한 條約이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와 관계있는 경우라면 聯邦閣僚會議는 그 結果를 聯邦大統領 및 聯邦最高會議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4條 經過期間 동안 聯邦閣僚會議 및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의 行政機關은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과 財產權 및 資產·金融計

정의 정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과 聯邦,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 및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 간의 關係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經過期間 중에 해결한다.

1.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위치한 聯邦所有의 施設物(産業의 下部構造, 宇宙開發, 動力工學, 通信, 海洋·鐵道·航空運送 部門에 종사하는 企業 및 工業團地, 通信網, 幹線送油管, 聯邦軍의 財產權, 防衛 기타 施設物)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公共機關이 소유하고 있는 財產權의 歸屬問題 決定.
2.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과 聯邦간의 金融·信用去來 및 銀行 간의 關係 정리.
3. 당해 共和國과 여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 간의 財產權 및 金融·信用去來의 정리.
4.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企業 및 機關이 이전에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의 領域內에 위치한 企業 및 機關에 대하여 부담한 契約上 責任의 履行節次 결정.
5. 資産의 기초가 당해 共和國의 財產權 또는 여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기타 自治體의 財產權인 合作企業 또는 企業支店の 法的地位 및 會計計定の 정리절차 결정.
6.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이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施設物을 건축하거나 당해 共和國 및 共和國 市民의 필요충족 또는 聯邦構成共和國 차원에서 購買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信用去來 및 貸付에 관한 他國 및 國際機關과의 會計計定 정리절차에 관한 合意.
7.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이 聯邦에 합류할 당시에는 당해 共和國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지역의 法的地位에 관한 合意
8. 國民投票의 結果로 표출된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이 집결하고 있는 地域의 意思를 고려한 당해 地域의 法的地位에 관한 合意.
9.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內에 위치한 歷史的·文化的 記念物 및 共同墓地的 維持에 관한 保障規定.
10. 相互整理를 要하는 여타 問題의 해결.

第15條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內에 거주하는 蘇聯市民은 市民權과

居住地 및 職場所在地를 선택할 權利를 가진다.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은 당해 共和國의 領土外로의 移轉과 관련한 모든 移住費用을 부담한다.

第16條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上的의 原則과 規範 및 聯邦의 國際的 尊守事項에 따라 民族, 皮膚色, 性別, 言語, 宗教, 政治觀 기타 信念, 國家的·社會的 胎生, 所得水準 또는 出生地·出生時期에 의한 차별없이 당해 領土內에 계속 거주하는 蘇聯市民의 市民的·政治的·社會的·經濟的·文化的 기타 權利와 自由를 보장한다.

第17條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法院에 의해 宣告를 받고 聯邦의 領土內에서 刑이 집행되고 있는 당해 共和國의 市民은 刑執行의 完了를 위하여 당해 共和國으로 移送된다.

聯邦法院 또는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의 法院에 의해 宣告를 받고 聯邦의 領土內에서 刑이 집행되고 있는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市民은 그가 宣告 받은 犯罪가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刑執行의 完了를 위하여 당해 共和國으로 移送된다.

聯邦法院 또는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의 法院에 의하여 宣告를 받은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市民의 移送에 관한 문제는 그 市民이 선고받은 犯罪의 1이 당해 共和國외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檢察總長 또는 당해 共和國最高法院의 申請에 기초하여 聯邦最高會議에서 심의한다.

聯邦法院 또는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의 法院에 의해 宣告를 받고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內에서 刑이 집행되고 있는 市民權이 없는 蘇聯市民, 外國市民 및 個人은 聯邦으로 移送된다.

第18條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內에서 행해졌고 聯邦 當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犯罪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모든 行政 및 刑事節次는 聯邦檢察廳 또는 最高會議를 거쳐 당해 共和國의 해당 機關에 移管한다. 다만 이러한 規則은 犯罪 중의 하나라도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領土 밖에서 행하여지거나 軍法會議의 管轄下에 있는 犯罪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事件의 移管에 관한 문제는 下級檢察官 또는 당해 共和國 檢察官의 申請을 기초로 聯邦檢察總長이 처리한다.

經過期間동안 모든 民事事件은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과 聯邦間的 合意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聯邦의 民法 및 民事訴訟法에 따라 처리한

다.

第19條 經過期間의 마지막 해에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의 最高權力機關의 발의로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 여부를 확정짓는 1회의 再國民投票을 실시할 수 있다. 再國民投票은 당해 共和國의 領土內에 常時 거주하고 聯邦法律에 따라 選舉權을 가지는 蘇聯市民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실시된다.

再國民投票의 실시문제가 제기될 당시 당해 共和國에 常時 거주하고 聯邦法律에 따라 選舉權을 가지는 蘇聯市民의 3분의 2이상이 再國民投票에서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決定을 확정하는데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共和國의 聯邦脫退決定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節次는 정지한다.

第20條 經過期間의 終了時 또는 이 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획보다 앞서 해결된 경우, 聯邦最高會議은 聯邦을 탈퇴하고자 하는 共和國, 聯邦, 여타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體 및 이 法 第3條에서 기술한 民族集團의 利害關係調整節次 및 異議提起를 확정짓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하여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를 소집할 수 있다.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脫退는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가 이같은 決定을 채택함으로써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聯邦人民代表會議은 당해 共和國에 대하여 權限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聯邦人民代表會議 總會는 聯邦憲法을 改正하여야 한다.

〈崔 星根 譯〉

〈參考資料〉

- The Law on Secessio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XLII, No. 15, 1990.

《研究基礎資料：翻譯》90-07(通卷 第7卷)

蘇聯의 聯邦脫退法

(非賣品)

1990년 12월 15일 인쇄

1990년 12월 2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한국법제연구원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